
2021학년도 신입학 재외국민특별전형 모집요강

▣ 재외국민 전형

▣ 북한이탈주민 전형

※ 모든 4년제 대학 수시 전형은 총 6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본 대학교 항공운항학과는 조종사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2020. 6

중 원 대 학 교

I. 주요일정, 원서접수, 합격자 발표, 등록 및 등록포기

1. 전형일정

<수시모집>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0. 09. 23.(수) ~ 09. 28.(월) 18:00 까지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원서서식: 국제교류원 홈페이지 확인 (http://intl.jwu.ac.kr)
서류제출		2020. 09. 23.(수) ~ 10. 30.(금) 17:00 까지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입학관리팀
면접고사		2020. 10. 17.(토) 예정	본교 입학홈페이지 확인 (지정 고사장)
합격자 발표		2020. 11. 27.(금) 예정	본교 입학홈페이지 게시 (ipsi.jwu.ac.kr)
예치금 납부	최초합격자	2020.12.28.(월) ~ 12.30.(수)	-
	충원합격자	2020.12.31.(목) ~ 2021.1.5.(화)	기간 중 지정일까지 납부
등록금 납부		2021. 02. 08.(월) ~ 02. 10.(수)	-

<정시(가)군>

구 분		일 정	비 고
원서접수		2021. 01. 07.(목) ~ 01. 11.(월) 18:00 까지	- 우편 또는 방문접수 - 원서서식: 국제교류원 홈페이지 확인 (http://intl.jwu.ac.kr)
서류제출		2021. 01. 07.(목) ~ 01. 26.(화) 17:00 까지	-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주소: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입학관리팀
면접고사		2021. 01. 20.(수) 예정	본교 입학홈페이지 확인 (지정 고사장)
합격자 발표		2021. 02. 05.(금) 예정	본교 입학홈페이지 게시 (ipsi.jwu.ac.kr)
등록금 납부		2021. 01. 11.(월) ~ 01. 15.(금) 16:00 예정	-

2. 원서접수

가. 방문접수: 중원대학교 입학관리팀 (본관 2층 M1 204호)

나. 우편접수 주소

(367-700) 충북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입학관리팀 (본관 2층 M1 204호)

Office of Admissions, Jungwon University 85, Munmu-ro, Goesan-eup,

Goesan-gun, Chungbuk, 367-700 Republic of Korea

다. 문의 연락처

Phone. +82 -43-830-8083 / +82 -43-830-8224

Fax.. +82 -43-830-8089

E-mail. sundoo@jwu.ac.kr / Homepage. intl.jwu.ac.kr

3. 전형료

가. 전형료: 100,000원

나. 전형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형과정에서 제외됩니다.

다. 원서접수가 완료된 경우, 취소 불가하며 전형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라. 전형료 납부 방법

- 현금납부 : 방문접수 시 가능
- 송금수표 : 우편접수 시 송금수표(수신자 중원대학교 입학처 또는 Office of Admission, Jungwon University) 로 지원 서류와 함께 해당 전형료 금액을 동봉하여 제출
- 무통장 납부 : 아래 납부계좌로 지원자 이름으로 전형료를 입금후 지원자이름, 출신국, 입금일자, 금액, 은행명을 입학관리팀 담당자 E-mail(sundoo@jwu.ac.kr)로 보내야 함

마. 전형료 납부 계좌 안내 : 국민은행 615801-04-211335 예금주 : 중원대학교

4. 합격자 발표 및 등록

구 분		발표일시	발표장소	등록금 납부 방법
수시	최초합격자	2020. 11. 27.(금) 예정	입학 홈페이지 (ipsi.jwu.ac.kr)	등록 기간 내에 지정된 은행에 등록금을 납부
	충원합격자	2020. 12. 31.(목) 예정		
정시		2021. 02. 05.(금) 예정		

5. 등록금 환불 안내

가. 등록금을 납부한 자가 등록을 포기하고 등록금을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납입기간 마지막 날로부터 최대 7일 이내에 본교 입학처 (☎ +82-43-830-8083)로 연락하여 등록포기의사를 밝혀야 함.

나. 등록금 반환 절차

- (1)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입학관리팀으로 등록포기각서를 제출하여 등록포기절차를 마쳐야 함.
- (2) 등록금 반환 시 제출서류
 - 등록포기각서(본교 소정양식) 1부 - 본교 등록금 납입 영수증 1부
 ※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못할 경우 부모 또는 지원 서류상의 재정보증인에 한하여 환불이 가능함
- (3) 3월입학 2021.02.28.(일) 이후에는 자퇴자로 처리하여 본교 수험료 징수규정에 의하여 반환한다.

II. 전형별 모집인원

(단위: 명)

유 형 단과대학 및 학과		입학 정원	모집가능인원		비고
			재외국민전형	북한이탈주민전형	
의료 보건 대학	간호학과	98	(5)	제한 없음	서류 50% + 면접 50%
	작업치료학과	40	(4)		
	임상병리학과	50	(5)		
	보건행정학과	30	(3)		
	의료뷰티케어학과	20	(2)		
항공 대학	항공운항학과	30	(3)		
	항공정비학과	35	(3)		
	항공서비스학과	43	(4)		
	항공기계공학과	45	(4)		
	신소재공학과	30	(3)		
합 계			5	제한 없음	

※ 재외국민전형은 모집단위에 관계없이 총점 순으로 선발하며, 모집단위별 선발가능인원은 모집단위 10% 이내로 함.

Ⅲ. 전형별 주요사항

1. 재외국민 전형

가. 지원자격: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 동등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 부모 중 1인 이상이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을 해외근무자로 재직/사업/영업하는 기간 동안, 해외근무자의 근무지 국가 소재 학교에서 고교과정 1개학년 이상(해당 기간에 진행되는 학제상의 모든 학기)을 포함하여 중·고교과정을 3개 학년 이상 수료한 자
- 해외체류일수 조건: 학생이 학기 개시일(또는 편입학 일자)로부터 각 1개년(약 365일) 기간마다 학생 본인은 3/4 이상, 부모는 2/3 이상을 해외근무자 근무지 국가에서 체류해야 함. (* 해외근무자는 배우자 및 학생과 함께 해외에 체류해야 함)

나. 유의사항

- 외국학교 인정기준
 - 1) 외국에 소재하고 있는 정규학교를 의미하며 국내소재 외국인 학교는 제외됨
 - 2) 부·모의 근무국 내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함
 - 3) 유아원, 유치원,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기관은 제외됨
- 외국학교에서 재학기간 인정기준
 - 1) 3년 이상 재학기준
 - 재학기간은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재학한 3년 이상의 기간을 말함
 - 출입국이 빈번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등학교 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3년 이상 계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간주함
 - 2) 우리나라 학제와 외국의 학제가 다른 경우, 우리나라 학제상의 교육 연한을 기준으로 외국 학제를 인정한다.
 - ▶ 외국의 1 ~ 6학년 과정(Grade 1 ~ Grade 6) : 초등학교 과정
 - ▶ 외국의 7 ~ 9학년 과정(Grade 7 ~ Grade 9) : 중학교 과정
 - ▶ 외국의 10 ~ 12학년 과정(Grade 10 ~ Grade 12) : 고등학교 과정
 - 3) 초·중·고등학교 학제가 12년 미만인 국가는 초·중·고등학교 12년 과정의 기간 중 부족한 학교과정의 기간만큼은 당해국 대학과정을 고등학교 과정으로 인정함.

○ 해외 체류 일수 조건

구분	내용
해외재학기간	• 고교과정 1개 학년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해외체류기간	• 학생: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3/4 이상 • 부모: 학생 해외재학기간 중 각각의 1개년 기간마다 2/3 이상
해외근무자 재직기간	• 역년으로 통산 3년(1,095일) 이상의 해외근무/사업/영업

- 체류일수 산정 시, 소수점 절사

다.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② 초.중.고 전학년 성적증명서 및 학교생활기록부 (재학기간 명시) ※ 외국소재학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or 영사확인 필요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각1부 ※ 외국소재학교: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or 영사확인 필요 ③ 가족관계증명서(부모, 학생) ④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 학생) ⑤ 사실증명발급신청위임장(부모, 학생) ⑥ 여권 사본(부모, 학생) ⑦ 재외국민등록등본(부모, 학생) ⑧ 부모 중 1인 재직증명서(해외 파견 재직자 및 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⑨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현지 취업자와 자영업자 제출서류) ⑩ 해외 재직회사의 법인세 납부이력(현지 취업자 제출서류) ⑪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항공운항학과 지원자는 제1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서(White card)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이나 부득이 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행기관(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대조 필한 사본을 제출하거나 최종합격 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 원본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사본과 함께 공증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에는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주소, 국제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전형요소: 서류심사 50% + 면접고사 50%

라. 전형방법

- 서류심사
 - 지원자가 사전 작성하여 제출한 원서 내의 학업계획서(성장배경, 지원동기 및 목표, 학업계획, 졸업 후 계획 등)에 의하여 평가
- 면접심사
 - 면접고사는 면접위원이 본교에서 개발한 문항을 질문하여 수학능력, 지원동기, 학업계획 및 비전, 본교 인재상과의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처리 안내
 - 지원자격 미달의 경우
 - 부정행위자
 - 면접고사 결시자
 - 서류 미제출자, 허위사실 발견된 자

2. 북한이탈주민전형

가. 지원자격:

초중등 교육법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나. 제출서류

제출서류
① 입학원서(본교 소정양식) ②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③ 학력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항공운항학과 지원자는 제1종 항공신체검사 증명서(White card)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불합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 원본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이나 부득이 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행기관(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대조 필한 사본을 제출하거나 최종합격 후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추후 원본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한국어나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서류는 반드시 사본과 함께 공증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 외국학교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등에는 출신 외국학교 발급부서의 영문주소, 국제전화번호, 팩스번호 등 연락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다. 전형요소: 서류심사 50% + 면접고사 50%

라. 전형방법

- 서류심사
 - 지원자가 사전 작성하여 제출한 원서 내의 학업계획서(성장배경, 지원동기 및 목표, 학업계획, 졸업 후 계획 등)에 의하여 평가
- 면접심사
 - 면접고사는 면접위원이 본교에서 개발한 문항을 질문하여 수학능력, 지원동기, 학업계획 및 비전, 본교 인재상과의 부합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처리 안내
 - 지원자격 미달의 경우
 - 부정행위자
 - 면접고사 결시자
 - 서류 미제출자, 허위사실 발견된 자

IV. 지원자 유의사항

※ 지원자는 본교 입학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시로 공지사항을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야 하며, 다음 사항을 숙지하여 지원과정에서 차질이 발생하거나 입학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수시모집 지원횟수 제한

- 가.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해야 합니다. (타 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음)
- 나.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할 경우, 초과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됩니다.

2. 수시모집 합격자의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 가.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의 합격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는 '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나. 수시모집에서 2개 이상의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는 1개의 대학에만 등록(등록 확인 예치금 납부 포함)해야 합니다.
- 다. 수시모집 예치금 납부에 있어 다수의 대학에 예치금을 납부하는 수험생은 대입지원 위반자로 처리하여 합격사실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개 대학에만 납부해야 함)
- 라.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각종학교' 간에는 복수지원 금지 및 이중등록 금지 원칙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경찰대학,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한국폴리텍대학 등
- 마. 수시모집 합격자가 충원합격자 발표 기간 중 다른 대학의 충원합격 통보를 받은 경우, 합격자는 등록을 원하지 않는 대학에 등록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여야 합니다. (등록포기는 입학홈페이지에서 신청)
- 바. 대학별 입학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사실이 전산자료 검색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무효로 합니다.

3. 복수지원 허용범위

- 가. 수시모집은 최대 6개 전형 이내에서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산업대학, 전문대학 지원과는 별도로 제한 없이 복수 지원이 가능함)
- 나. 우리대학 수시모집 내 모든 전형 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각 전형별로 하나의 모집단위에만 지원 가능)

4. 합격·입학 취소 및 사정제외 처리

- 가. 아래 해당자는 사정제외 및 합격·입학취소 처리됩니다.
- (1)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위반자
 - (2) 지원자격 미달자
 - (3) 지정된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미비한 자
 - (4) 제출서류 허위기재, 위조, 변조, 위법 지원자격 취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합격·입학한 자
 - (5) 면접·실기고사에 결시한 자
 - (6) 지정된 기간 내 미등록 및 등록금 미납부자
 - (7) 전형별로 정하는 결격처리, 합격·입학을 취소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자
- 나. 입학 후이라도 서류 검증 등을 통하여 주요사항 누락, 서류 위조 및 허위 사실 등 부정입학이 확인되는 경우 재학(졸업포함)중이라도 입학을 취소합니다.
- ※ 위 내용으로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 해당자가 납부한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함. 단, 등록금을 납부한 학기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별표2의 반환기준에 준하여 반환함.
- 다. 대입 지원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하거나 이에 협조하여 공정한 학생 선발 업무를 방해한 경우, 입학무효 및 별도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일반 유의사항

- 가.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위임제출 포함)의 입력사항 착오,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연락처 불명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나. 제출된 서류상의 이름이 각각 다를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나 재외공관장 발행의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 고교졸업예정자의 경우 입학 이전에 졸업하지 못하면 입학을 취소합니다.
- 라. 합격 후 국내외 전적학교에 학적 및 거주사실 등 지원서류 조회결과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를 기재한 사실이 밝

허질 경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합니다.

마. 입학원서에 기재된 전화번호 및 주소가 오기 또는 변경되어 연락이 두절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 대학이 책임지지 않는다. (전화번호, 주소 변경 시 본교 입학처로 통보하여야 함)

바. 면접고사 시 수험표,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을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사.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본 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관련지침, 본교의 입학 사정원칙 및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